



학교에서의 결핵관리

결핵은 전염병이다. 따라서 발병 확인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더 많은 환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집단에서의 결핵환자 관리는 무척 중요하다. 특히 학교와 같은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은 더욱 그러하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결핵 발견 시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학교 결핵관리의 목적

유치원(어린이집 포함)과 초·중·고등학교 내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결핵 감염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치료를 실시하고 결핵 발병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있다.

기본방향

결핵환자,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실시

한다. 결핵 잠복감염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치료실시(결핵 발병 고위험군 대상)와 추서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치료 실시와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추서관리를 철저히 한다.

행정단위별 역할과 기능

학교 / 학교장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나 결핵의심자로 통보받을 때,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치료중인 학생 및 직원을 발견했을 때 환자명부를 작성하고 2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위의 경우 2주 이상의 심한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있는 등 결핵 의심자 및 보호자에게 보건소로 방문토록 지도한다. 만약 방문하지 않을 시에는 재차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자를 환자명부에 기록하여 비치하고 치료환자에 대해 수시로 상담교육(복약확인 등)을 실시하며, 전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에게는 결핵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보건소 / 보건소장은 교직원과 학생이 등록 및 퇴학시 치료 상황 및 결과를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학교 내 결핵발생 즉시 시도 보건과에 보고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결핵 환자 및 결핵 의심자, 보호자에게 내소하도록 연락을 실시한다. 환자가 내소하면 결핵환자의 경우 의무기록조사서, 면접조사서를 작성하고 치료중인 경우 현재의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토록 하며,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자인 경우 보건소에 등록시켜 치료한다. 결핵의심환자나 유소견자일 경우 흉부엑스선 직접촬영을 실시하고, 객담검체 2개를 수집하여 도말검사를 실시하며, 2검체 모두 대한결핵협회 지부에 배양검사를 의뢰한다.

보건소장은 방문 예정일까지 방문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에게 우선으로 협조를 요청하며, 학교 내 결핵발생 일주일 이내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다. 결핵환자 관련 자료 및 접촉자 검진 등 자료를 TBnet에 입력하고 집단 내 결핵 발생시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시도 보건위생과 / 학교 내 결핵 발생 및 역학조사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다. 학교 내 결핵유병 발생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시도 결핵관리과는 역학조사를 계획, 지휘, 감독하고 결핵관리 담당자는 역학조사 지원 및 대상 기관에 대한 조사 협조 유도)하고

관할 보건소의 집단 내 결핵 역학조사 및 관리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 학교 내 결핵 유행 발생 관리 지침을 교육하고 시도의 학교 내 결핵유행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 학교 내 결핵유행 발생 자료를 구축하고, 학교 내 결핵유행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내용을 평가하고 환류한다.

대한결핵협회 / 보건소에서 의뢰된 검체에 대해 즉시 도말 및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 즉시 보건소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이동 흉부 엑스선 검진을 지원하고 배양양성 결핵균주를 결핵연구원으로 송부한다.

결핵연구원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기술 및 진단 등의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배양 검사 양성시 약제감수성 검사 및 DNA 검사 등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건소장에게 통보한다.

접촉자 조사

접촉자는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함께 거주했던 가족, 친지 또는 접촉한 주변인을 말하며 학교결핵관리의 경우 친구, 학생, 교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밀접 접촉자라 함은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매일 접촉하는 자를 말하며 동거가족, 친한 친구, 해당 학교학생 등이 해당된다. 결핵환자로 진단받으면 결핵치료를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받으면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잠복결핵감염치료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에 대한 환자사례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에 대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조사일정 등을 협의한다.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 흉부 엑스선검진을 시행하며, 그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있거나 흉부엑스선 사진이 정상이라도 결핵이 의심되면 객담검사를 실시한다.

결핵의심자는 아니지만 밀접 접촉자인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사(PPD나 인터페론 감마 검사)를 실시한다. 소집단발생 및 의심이 아닌 경우는 결핵 감염자로 판단되고 시도결핵관리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잠복결핵감염치료를 실시한다.

대한결핵협회는 보건소장이 접촉자 조사를 위한 이동엑스선검진 요청 시 다른 사업에 우선

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건소장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추구관리

학교장은 결핵환자 및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소장으로부터 치료 완료된 학생 명단을 통보받아 환자관리를 종료 처리한다.

보건소는 치료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 및 복약확인을 철저히 시행한다. 수약 불협조자인 경우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복약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수약일을 지키도록 설득한다. 또한 환자가 퇴학하면 그 결과를 학교로 통보한다. 대상 집단에 대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3, 6, 9, 12개월 등) 후에 추구검진(엑스선 검사 등)을 실시한다.

행정사항

보건소장은 환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결과를 TBnet에 입력하여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월별 환자발생 및 접촉자조사 결과를 매월 10일 이내에 TBnet을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결핵기자재 및 시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고 이동 엑스선검진 비용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지원한다. 학생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보건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학교 소재지 보건소가 행정관리를 총괄한다. †

위의 글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한 「2010 결핵역학조사관리지침」에서 학교결핵관리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